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 신설〉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변호인의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정무직공무원의 임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3(정무직 공무원의 임명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는 변호인의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후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무직공무원의 임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헌행법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자질에 흠결이 있거나 행위능력·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¹⁾²⁾ 정무직공무원³⁾에 대해서는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로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임용행위는 당연히무효에 해당함.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4.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임용 결격사유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도 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임명을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실무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무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무직공무원의 중립성 및 청렴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음.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⁴⁾과는 달리 해당 임용권자의 정치적 책임 하에 임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결격사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고,

정무직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한 직업적 이력 및 사건 수임 사실을 정무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인정될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대통령과의 긴밀한 사적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변호사 중에서도 대통령의 변론을 담당한 자만을 특정하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정무직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신분보장이 없는 직위로서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주요 정무직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그리고 특정 사건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무직공무원 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